위생용품 관리법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(보수) 관련 안내사항입니다.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9조(위생교육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업자는 **매년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(3시간)**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 '22년 영업자 위생교육(보수)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**2022년 12월 31일까지**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34조(과태료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(3시간)을 받지 아니할 경우, 과태료**(1차 위반 시 30만원, 2차 위반 시 45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)**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자 위생교육(보수)은 **한국식품정보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** 및 **㈜세스코**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, 세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.

【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자 위생교육 기관 】

교육기관	주소	연락처	교육형태
한국식품정보원 (https://foodi.com)	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, SKV1 GL메트로시티 A동 1006호	042-820-9000	집합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(http://sub.ktr.or.kr/edu)	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(중앙로)	1577-0091 (내선 4번)	집합
㈜세스코 (http://cescoacademy.co.kr)	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	02-2140-0288	**온라인** **(상시)**

* 세부적인 교육 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관에 문의